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시설사업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공공시설건축과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한시정원 5명(4급 1명, 5급 1명, 6급 2명, 7급 1명)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5.2. ~ 5.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사업관리총괄과·광역도로과 및 공공청사건축과”를 “사업관리총괄과·광역도로과·공공청사건축과 및 공공시설건축과”로, “광역도로과장 및 공공청사건축과장”을 “광역도로과장·공공청사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
2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설계·시공 및 준공에 관한 사항
3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
4. 문화·예술·복지·보건 및 체육 시설의 운영지원 및 특화에 관한 사항
5.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6.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7.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
8.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

제13조를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135”를 “1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34”을 “139”로 하며,
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8”을 “9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12”를 “13”으로 하고,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다음에 “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”를 신설하고,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“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135”를 “140”으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34”을 “139”로 하며,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“8”을 “9”로 하고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“12”를 “13”으로 하고,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다음에 “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”를 신설하고,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다음에 “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신 · 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7조(시설사업국) ① (생략)	제7조(시설사업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설사업국에 <u>사업관리총괄과</u> <u>· 광역도로과 및 공공청사건축과</u> 를 두며, 사업관리총괄과장은 부 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 기관으로, <u>광역도로과장 및 공공</u> <u>청사건축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<u>사업관리총괄과</u> <u>· 광역도로과 · 공공청사건축과</u> <u>및 공공시설건축과</u> ----- ----- ----- <u>광역도로과장 · 공공청사</u> <u>건축과장 및 공공시설건축과장</u> 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삭제	
<u><신설></u>	⑧ 공공시설건축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 1. <u>문화 · 예술 · 복지 · 보건 및 체</u> <u>육 시설의 배치계획 수립 및 설</u> <u>치에 관한 사항</u> 2. <u>문화 · 예술 · 복지 · 보건 및 체</u> <u>육 시설의 설계 · 시공 및 준공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3. <u>문화 · 예술 · 복지 · 보건 및 체</u> <u>육 시설의 공정관리 및 예산관</u> <u>리에 관한 사항</u> 4. <u>문화 · 예술 · 복지 · 보건 및 체</u> <u>육 시설의 운영지원 및 특화에</u>

제13조(공공시설건축과) ① 공공시설건축과의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.
② 공공시설건축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.

관한 사항

- 5. 상징 건축물 및 조형물 건립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- 6. 도시건설 추진현황 기록화 및 역사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
- 7. 도시 내 역사공원설치 관련 공간시설의 계획 및 배치에 관한 사항
- 8.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하는 광역도로건설 관련 국가유산 조사에 관한 사항

<삭 제>

< 신·구정원 대비표 >

[별표 1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본문 관련)

현 행	개정안	비 고
총 계 135	총 계 140	+5
·	·	·
일반직 계 134	일반직 계 139	+5
·	·	·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8	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9	+1
·	·	·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	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	+1
·	·	·
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	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	·
·	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	+2 (신설)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 주사보 4	행정주사보 또는 시설 주사보 4	·
·	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	+1 (신설)

[별표 2]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(제10조제1항 단서 관련)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총 계 135	총 계 140	+5
·	·	·
일반직 계 134	일반직 계 139	+5
·	·	·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8	서기관 또는 과학기술 서기관 9	+1
·	·	·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2	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3	+1
·	·	·
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	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	·
·	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	+2 (신설)
행정주사보 또는 시설 주사보 4	행정주사보 또는 시설 주사보 4	·
·	공업주사보·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	+1 (신설)